

# Act2022

## 넥상스 그룹 단체주식청약제도 한국직원용 설명 자료

넥상스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2022 년도 넥상스 단체주식청약제도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에서의 청약 및 주요 세무사항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본 한국직원 설명자료는 Act 2022 직원 브로셔, FCPE Relais 2022 정보공지, 주식평가보상권 정보공지 및 기타 배부될 자료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의 청약

#### 예약기간

예약기간은 2022 년 5 월 9 일에 시작하여 2022 년 5 월 24 일(당일 포함)에 종료합니다. 이 예약기간 동안, FCPE 를 통한 넥상스 주식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기간

철회기간은 2022 년 6 월 23 일에 시작하여 2022 년 6 월 28 일(당일 포함)에 종료합니다. 이 철회기간 동안, 원한다면 청약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철회기간이 만료되면, 청약신청은 구속력이 생기게 되며 취소 불가능하게 됩니다.

#### 청약가

청약가는 2022 년 6 월 22 일 넥상스 그룹의 CEO 가 결정할 것이며, 이는 청약가 확정일 전 20 거래일간의 넥상스 주식의 평균시가(始價)에서 20% 할인한 금액과 같습니다.

넥상스 플러스 2022(Nexans Plus 2022) 제도에서 귀하의 고용주는 주식평가보상권(SARs)을 부여합니다.

청약가는 귀하의 소속 회사 내 및 Act 2022 목적으로 개설된 내부전산망에 공지될 것입니다.

청약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청약목적상, 여러분이 원화로 지급하는 금액은 2022 년 6 월 22 일 여러분의 고용주가 알려준 환율에 따라 환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간 동안, 본 설명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FCPE 를 통하여 청약한 넥상스 주식의 가치는 유로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커진다면 원화로 환산되는 주식가치 및 여러분에게 지급될 주식평가보상권 금액은 상승할 것이지만 반대로 원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작아진다면 원화로 환산되는 주식가치 및 여러분에게 지급될 주식평가보상권 금액은 감소할 것입니다.

## 주식평가보상권(SAR)에 대한 설명

본인이 수취할 수 있는 주식평가보상권 금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SAR 방식에 대한 기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SAR 정보공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납입방법 - 주식청약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까?

다음의 납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은행계좌로 현금 지급에 의한 납입 (계좌이체): (i) 극동전선: 신한은행, 100-022-019467; (ii) 넥상스코리아: 신한은행, 062-032211-04-138; (iii) 넥상스대영: 신한은행, 062-032211-04-138 또는
- 급여공제

만약 인터넷을 통해 청약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정식으로 작성한 청약신청서를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 이메일주소: [Korea.HR@nexans.com](mailto:Korea.HR@nexans.com) 또는 다음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84 현대레이크빌 2층, 넥상스인코리아

## 외환관리

주식취득금액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별 청약자의 송금에 관한 위임장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기인출 -어떠한 경우에 조기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본 청약제도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을 2027년 7월 26일로 종료되는 기간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혼인;
2. 세 번째 자녀 또는 그 이상의 자녀의 출산 혹은 입양;
3. 이혼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 한함);
4. 새로운 주거공간의 건설을 포함하여 주 거처의 취득 혹은 증축의 목적으로 본 투자자산을 사용;
5. 고용계약의 종료;
6. 직원, 직원의 자녀 혹은 배우자의 장애;
7. 직원 혹은 직원 배우자의 사망;
8. 직원의 배우자, 파트너(등록 여부 불문) 또는 전 배우자나 파트너가 직원에 폭력을 행사하고 해당 행위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러한 조기인출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프랑스 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프랑스 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입증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회사측에서 조기인출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기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려서는 안됩니다.

## 직원들을 위한 세금에 관한 정보

본 요약에서는 (i) 한국세법 및 1979년 6월 19일에 서명된 한국-프랑스간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조세협약”)의 적용 목적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고 투자자산 처분시까지 한국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며 (ii) 동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원칙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권고사항으로서, 직원들은 FCPE “Nexans Relais 2022”을 통하여 넥상스 주식을 청약함에 따른 세무사항에 대하여 각자 별도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정보 브로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CPE “Nexans Relais 2022”은 청약 기간 종료 직후 기존 FCPE “Actionnariat Nexans”과 통합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ct 2022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통합후 FCPE “Actionnariat Nexans”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본 요약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시되는 것이므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래에 열거된 세무사항들은, 청약 당시 유효한 것으로서 조세협약뿐만 아니라 한국 및 프랑스의 세법 그리고 세무관행에 따라 설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약, 세법 및 세무관행은 추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점

#### **I. 청약 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청약가가 취득시의 시장가보다 낮기 때문에 청약시 할인금액은 과세대상이 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6.6%~49.5%<sup>1</sup>의 누진세율(주민세 포함)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외국인의 경우 20.9%의 단일세율을 선택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주식에 대한 할인금액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는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즉, 고용주는 관련 비용을 부담 또는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고용주에게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사회보험료는 현재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시의 시장가와 관련하여, 주식의 취득시점은 해당 직원의 계좌에 주식이 이체되는 시점입니다. 청약가는 총액으로 납입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12개월에 걸친 급여공제는 고용주가 제공한 대여금의 상환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

<sup>1</sup> 2021년 1월 1일자로 최고 세율이 49.5%로 인상되었습니다.

## II. Act 2022 에서의 주식평가보상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평가보상권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의 권리 - 예를 들면 배당수령권 및 의결권 등 - 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식평가보상권의 부여 시점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III. 무이자 대여금은 과세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12 개월 분할 급여공제를 통하여 청약가격을 납입하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청약금액에 해당하는 무이자 대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급여공제에 따라 감소하는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러한 이자금액은 (i) 연 이자율 4.6% 또는 (ii) 고용주가 제 3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의해 산출됩니다.

이러한 인정이자 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에 가산될 것이고,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6.6% ~ 49.5%<sup>2</sup> (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인정이자 금액은 국내 고용주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 연말정산시 해당 직원의 과세소득에 인정이자금액을 가산).

이러한 금액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료의 계산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고용주 및 직원이 각각 3.923837% 부담), 국민연금 (고용주 및 직원이 각각 4.5% 부담), 고용보험 (직원이 0.80%, 고용주가 1.05%~1.65%<sup>3</sup> 부담), 산재보험 (고용주만 0.70%~18.60% 부담),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주만 0.06% 부담)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분담금 (고용주만 0.003% 부담). 직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시 고용주가 원천징수 하여 납부합니다.

## IV. Nexans 대응출자금 (matching contribution)은 과세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응무상주식(matching free shares)은 교부 시 과세됩니다. 소득세는 6.6%~49.5<sup>4</sup> %의 누진세율(주민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대응무상주식(matching free shares) 비용을 부담하거나 관련 비용을 Nexans 에 상환하지 않으므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세금은 귀하가 직접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

<sup>2</sup> 2021 년 1 월 1 일자로 최고 세율이 49.5%로 인상되었습니다.

<sup>3</sup> 2022 년 7 월 1 일자로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직원의 경우 0.9%, 고용주의 경우 1.15~1.7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sup>4</sup> 2021 년 1 월 1 일자로 최고 세율이 49.5%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귀하의 고용주는 대응무상주식(matching free shares)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응무상주식(matching free share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귀속되는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 투자기간 동안

### V.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Act 2022 에서, 배당금 지급 시 당해 배당금은 FCPE “Actionnariat 넥상스”에 따라 자동으로 넥상스 주식에 추가적으로 재투자 됩니다. 이러한 배당금의 재투자에 따라, 여러분은 추가적인 FCPE 지분단위 (또는 그 일부)를 발행 받게 됩니다.

#### (i) 프랑스에서의 과세

넥상스가 FCPE 에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프랑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ii) 한국에서의 과세

그렇습니다. FCPE 가 넥상스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이, FCPE “Actionnariat 넥상스”에 의하여 추가적인 넥상스 주식에 자동으로 재투자된다고 하여도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 6.6% ~ 49.5%<sup>5</sup> (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직원은 FCPE 가 배당금을 받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 월에 이러한 배당소득 (해당 연도 동안 얻은 다른 소득과 함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VI.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부유세를 납부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

<sup>5</sup> 2021 년 1 월 1 일자로 최고 세율이 49.5%로 인상되었습니다.

## 환매 시점

**VII. 인출제한기간이 만료(혹은 조기인출의 승인)됨에 따라, FCPE 에게 환매를 요청할 때 그리고 주식평가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될 때,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 **1. FCPE 단위 환매시의 과세**

(i) 프랑스에서의 과세

지분 환매에 따라 실현되는 이익은 프랑스에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ii) 한국에서의 과세

그렇습니다. 해당 직원이 한국인이거나 지분환매 당시 계속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FCPE 지분단위의 환매에 따라 실현되는 이익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해당직원이 지급 받게 되는 환매금액에서 지분의 취득가액 즉, (i) 납입한 청약가격, (ii) 청약시 과세된 할인금액, 그리고 (iii) 투자기간 동안 넥상스 주식에 재투자된 배당금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직원은 지분 환매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3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25억원 기본공제 차감)이, 3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7.5%(25억원 기본공제 차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출제한기간의 만료 시에 FCPE “Actionariat Nexans”에서 지분을 환매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세금은 실제로 지분을 환매할 때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 **2. 주식평가보상금액 수령시의 과세**

그렇습니다.

주식평가보상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6.6% ~ 49.5%<sup>6</sup> (주민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평가보상금액은 급여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될 것이므로 국내 고용주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주식평가보상금액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료의 계산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고용주 및 직원이 각각 3.923837% 부담), 국민연금 (고용주 및 직원이 각각 4.5% 부담), 고용보험 (직원이 0.80%, 고용주가

---

<sup>6</sup> 2021년 1월 1일자로 최고 세율이 49.5%로 인상되었습니다.

1.05%~1.65%<sup>7</sup> 부담), 산재보험 (고용주만 0.70%~18.60% 부담),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주만 0.06% 부담)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분담금 (고용주만 0.003% 부담). 직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시 고용주가 원천징수 하여 납부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출제한기간의 만료 시에 FCPE 에 지분을 환매하여 현금화 시키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평가보상권 지급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위에서 설명한 주식평가보상금액에 대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

<sup>7</sup> 2022 년 7 월 1 일자로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직원의 경우 0.9%, 고용주의 경우 1.15~1.7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